

#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92호

##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 2. 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창원시장, 창원시민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하여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확산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 관한 조례안

(박해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2
----------	-----

발의연월일 : 2023. 8. 29.

발 의 의 원 : 박해정 · 김남수 · 김우진 · 남재욱 · 박선애  
백승규 · 서명일 · 심영석 · 이우완 · 이원주  
전홍표 · 정길상 · 정순욱 · 진형익 · 최정훈  
한상석 · 한은정 의원(17명)

### 1. 제안이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창원시장, 창원시민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하여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확산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② 창원시민과 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확산)**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지원 사업
2.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장소)**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창원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에서 건립한 경로당,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시 관내 공공기관
2.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 관내 단독주택, 공동주택
3. 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
4.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장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용 지원신청,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착오 등으로 잘못 지원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7조(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4. 태양에너지 설비
  -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5.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6. 수력 설비: 물의 유동(流動)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바이오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10. 폐기물에너지 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1. 수열에너지 설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2.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주택지원사업 등) 주택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공공주택

제24조(건물지원사업 등) 건물지원사업 및 시범적 사업은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

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지원사업 : 제21조의 주택, 제26조제1호 및 제2호의 건물·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2. 시범적 사업 : 제1호의 건물·시설물을 포함한 모든 건물·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려고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제26조(지역지원사업 등) 지역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2. 사회복지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로부터 신청권을 위탁받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소유자는 자부담과 사후관리 등을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제35조(융·복합지원사업 등) 융·복합지원사업은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하거나,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려는 경우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 11. 생략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공동이용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